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조명·전기설비학회지를 편집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본 위원회는 학회지와 논문지의 발간 방침을 수립, 투고논문의 심사 및 기타 편집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회지(년4회) 1,4,7,11월 말일발간, 논문지(년6회) 짝수월 28일자로 발간한다.

제3조(구성) ① 학회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편집이사로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단,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 선정 시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실적 및 논문게재가 다수이며, 적극적인 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7년 5월13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2. “ 1996년 11월 6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3. “ 2001년 9월 12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4. “ 2006년 11월 22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5. “ 2018년 9월 12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발간일 개정)
6. “ 2019년 10월 16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학회지 발행횟수 개정)
7. “ 2022년 10월 12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논문지 발행횟수 개정)